

일반대학원 법학과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

제정 2007.09.03.
개정 2008.10.28.
개정 2010.03.30.
개정 2012.01.19.
개정 2014.08.04.
개정 2015.01.13.
개정 2018.05.02.
개정 2018.05.16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따라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2조(응시자격)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이상 등록한 학생이어야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이상 등록한 학생로서 석사과정은 12학점이상, 박사과정은 18학점이상 취득하고, 다만 석사.박사통합과정생은 4개 학기이상 등록하고, 30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이어야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3조(응시절차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정된 서식의 응시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4조(시험시행일정)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각각 1회 실시한다. <개정 2012.1.19.>

② 시험일자는 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응시과목 및 시험방식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외국어시험

가.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로 한다. <개정 2015.1.13.>

나 ~ 다. 삭제 <개정 2015.1.13.>

2. 종합시험

가. 종합시험(전공시험)의 시험과목(이하 “교과목”이라 한다)선정과 세부시행방식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
나. 원장은 본 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6조(출제 및 채점위원)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속 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영어시험의 대체시행) ① 외국어시험중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또는 TOEFL(PBT 성적 제외) 성적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며, 합격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성적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8.5.16.>

1. TEPS 성적 327점(단, 247회 이전 TEPS 성적일 경우 601점)

2. 1999학번 이전은 TEPS 성적 268점(단, 247회 이전 TEPS 성적일 경우 501점)

3. TOEFL은 이에 준하는 성적

② 삭제 <2014.8.4.>

③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전(1학기는 4월초, 2학기는 10월 초)까지 제1항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원장은 학생들이 제출한 영어성적에 대한 합격인정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8조(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) ① 외국어시험 성적(TEPS 또는 TOEFL)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. 다만,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합격인정 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학위취득 시 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2.1.19.>

② 제1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9조(외국어시험의 면제) ① 「학위수여규정」 제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과목(영어과목 제외)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19.>

1.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제12조의 학위과정별 합격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<개정 2012.1.19.>
 2.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(학기)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그 성적이 “C-이상” 또는 “S”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<개정 2012.1.19.>
 3. 그 밖에 각 대학(원)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<개정 2012.1.19.>
- ② 외국어과목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10조(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)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(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), 한국어,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. 다만, 영어가 모국어(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)인 경우(영어 시험 면제)에는 한국어과목을 선택한다.

제11조(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)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2.1.19.>

- ② 한국어시험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.
- ③ 한국어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행하되, 과정별(석사, 박사과정) 및 학문분야별(인문·사회계열, 자연계열, 예술계열)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2.1.19.>
- ④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1.19.>
- ⑤ 한국어시험(구술고사 포함)의 시험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임 교원 중에서 3명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19.>
- ⑥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(한국어와 한국문화 1, 2)을 수강하고, 그 성적이 “C-이상” 또는 “S”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, 대체과목의 취득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<개정 2012.1.19.>
- ⑦ 원장은 매 학기 한국어시험(구술고사 포함)의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고, 그 명단을 지정된 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12조(합격점수) 과목별(영어과목 제외)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60점 이상,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13조(재응시)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.

제14조(합격자 발표 및 보고) 각 대학(원)장은 매 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, 그 결과를 1학기는 3월말, 2학기는 9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제15조(문서의 보관)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는 각 대학(원)에서 보관하며,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제지 원안 및 답안(채점)지 : 5년
2. 결과표(사정일람표) : 준 영구
3. 기타 서류 : 1년

제16조(자체 내규 재개정 및 보고) 원장은 규정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등에 대하여 시행하기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9.>

부칙 <2007.8.23.>

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10.28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3.30.>

이 지침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1.19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8.4.>

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1.13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5.2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5.16.>

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